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3. 9. 4(수)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제3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31차 서면회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이경재 위원장

- 제31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한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 1건이 모두 공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관한 건 (2013-32-127)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2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정 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 받은 내용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를 도입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1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1월~6 월까지 고시 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행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바 있습 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대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박스와 오른쪽을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인증기관은 신청기업의 인증심사를 수행해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을 신청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태 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고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해 방통위는 인정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지정대상 기관의 수와 업무의 범 위 및 신청방법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공고하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방통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표시를 보시면 KISA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기 지정되었습니다. 방통위는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요건·능력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제출받고, 인증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인증기관의 기업체 인증심사 및 기준입니다. 인증신청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팀을 구성하여 인증신청 기업에 대해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위해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서 관리 및 기타입니다. 인증기관의 장은 기업체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인증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 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기술료로 구성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이 되면 관보 게재 후 바로 시행을 9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효력이 얼마 동안 가는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3년입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3년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다시 하려면 6개월 전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대희 상임위원

- 실질심사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2013-32-128)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나>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안건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입니다. 의결주문은 통신사업자 이용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 니다. 제안이유는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사업 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평가계획의 주요내용은 먼저 평가위 원회 구성입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의 전 문가로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대상은 최근 5년간 정부 CS센터에 접수된 민원다발서비스 분야의 주요 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 3개사, 초고속인터 넷 사업자 8개사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평가기준은 평가지표를 크게 첫 번째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두 번째 사전적 이용자보호활동, 세 번째 정부민원 처 리실적 등 3개 분야의 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 지표는 평가위원회에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가결과의 활용입니다. 서비스 분야별로 평가항목을 점수화하여 5단 계 등급으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한 포상을 추진 하고, 또 과징금 부과 금액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이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9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 까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후에 발표토록 하 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법」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법」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방송법」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가> 방송사업 자 재산상황공표 범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 IPTV를 포함시키고,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는 방송사업자 회계정리에 관한 기

준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권조정 도입 등 방 송분쟁해결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권조정 도입입니다. 현행 방송법상 분쟁조정은 사업자 신청이 있어야만 개시될 수 있습니다만 심각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방송분쟁에 한하여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을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제도 신설입니다. 분쟁당사자가 재정을 신청한 경우 당사 자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방통위 결정으로 분쟁이 종결되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으 로만 다툴 수 있는 재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송의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 권입니다. 심각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방송분쟁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방송의 공급·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 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 공익채널을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입 니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는 공익채널 운용의무가 있으나 의 무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흠결되어 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채널을 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 합니다. 끝으로 기타 조문 이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법 편제에 부합되도록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다른 지역 공동체라디오 프로그램 편성제한을 현재 재송신조항 부분에 있습니다만 이를 삭제하고 대신 편성조항으로 이동시켜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를 마친 후 9월~10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를 거친 후에 규개위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후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이 안건들 즉 직권조정, 재정제도,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 같은 것들이 결국은 사업들 간에 SO와 PP, 또 여러 멀티미디어 시대의 사업자들 간의 갈등조정이 안 돼서 생기는 블랙아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통위의 칼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또 사업자들에 따라서는 그것을 행정의 과도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입법예고가 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엄밀하게 체크해 나가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은 분쟁조정에 관한 사후

규제에 관한 규정이 주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문제가 되는 재송신 제도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제도도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것이 제 기억에 작년 여름인가 이 부분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번 의결이 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상파 재송신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하면 KBS2를 의무 재송신시키느냐, 마느냐 이 논란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시장에 맡겨 두고, 지금 이야기했던 직권조정, 재정제도 신설,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 이 3가지만 있으면 방송 통신위원회가 방송 송출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 3가지가 이미 법제화가 됐으면 지금 재전송이라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리고 재전송 논란을 할 이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지난해 2월 3일 재송신 보고를 하면서 분쟁해결 조정 부분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 당시에 5가지의 안이 있었는데 <제1안>, <제2안>이 KBS2를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한 다, MBC만 포함한다 이런 안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3안>, <제4안>, <제5안>이 아마 이 런 유지재개 명령이나 직권조정이나 재정제도와 관련한 부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발언록을 찾아보면 이것만 정리되면 재전송 논란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이상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시장에 맡겨라,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소한 이 정도의 권한으로…, 이 권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방송송출 중단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고 그 이상을 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어가느냐라는 입장에서 제기했는데, 이것이 지 금까지 전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사무처가 해명해야 합니다. 어쨌든 국장과 과장이 새로 바뀌어서 인수인계 받는 과정, 그리고 앞쪽에서 이 부 분을 구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넘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재 전송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프레임을 가져다주는 것이고, 이 프레임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입 의 범위도 이 정도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가 부위원장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도 신중하 게 해야 하는데 그 너머 의무재전송 채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의 개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빨리 법제 화시키고 우리가 이 수단을 가지고 재전송 문제를 다시 시행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재전송 문제를 봐야지, 재전송 문제와 이 문제를 동시에 보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 법안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 부분은 재송신 분쟁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어떻게 해법을 찾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미국에서는 재전송 관련해서는 의무채널과 선택채널 2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재조정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권이 상당한 힘을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서 분쟁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역이 미래부에 속한 부서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재전송 문제는 지상파와 관련된 문제니까 방통위와 관련된 문제지요.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이해조정을 잘해서 내용을, 이것만 가지고도 재송신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함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 ㈜조선방송 등 5개사 (2013-32-129)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다>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방송 등 5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개사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승인 기본심사의 방향입니다. 종편· 보도PP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 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심사기준을 구체화해서 심사위원회 심사에 관한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상세하게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0인으로 구성코자 합니 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 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를 평가하고,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입니다. 주요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정 심사사항과 재 허가·재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외부전문가와 토론회 등을 거쳐 제시 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구성입니다. 방송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9개 심사사항과 17개 심사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송평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방송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방송평가'를 재승인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송평가위원회가 매년 방송 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입니다. 두 번째 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입니다. 이는 방송 법 제10조제1항제1호와 제17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하위 심사항목으로는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시청자 권익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두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반에서는 '방송법 및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를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 실현' 심사항목에서 감점하고 또한 별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여 중복 감점하자는 의견 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위반을 중복 감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방송의 공 적책임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인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서만 감점 처리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에 대해 연구반에서는 신청법인과 주요 주주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청법인이 이미 초기 구성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인 점, 방송법 제15조의2에서도 최다액출자자만 규제하고 있 는 점 및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을 두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방송프로그 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심사 사항입니다. 이 하위 심사항목으로 기획 · 편성의 적정성, 수급의 적절성, 제작 · 협력의 적절성 을 두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심사사 항으로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심사항목으로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조 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입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 로 하위 심사항목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조직 ·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두고자 합니다. 연구반에서는 별도 심사항목으로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안해 왔습니다만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구 성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와 제 17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이며, 일곱 번째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 · 사회적 · 문화 적 필요성과 타당성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3호와 제17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입니 다. 여덟 번째,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와 제17조제3항제6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이며,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 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 이지 배점입니다. 각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에 대해서는 2개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1안>은 재승인 총점 1000점 중에서 350점을 '방송평가'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하는 방안입니다.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 및 심사 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되 종편의 공 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하 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2안>은 재승인 총점 1000점 중에서 400점을 계량평가 비중 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방송평가'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0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

가점수로 배점하는 방안입니다.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과 심사항목의 배점은 지상파방송 재허가·보도PP 재승인시 배점, 연구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페이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편PP 재승인 <제1안>은 방송평가위원회 의 방송평가 35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2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점,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 30점,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점,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는 감점처리하는 방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제2안>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를 50점을 더하여서 400점으로 하고, 반면에 제2항에서 20점을 감하고 제3항에서 20점을 감하 고 제8항에서 10점을 감하는 내용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보도PP 재승인에 대해서는 제1항 방송 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를 350점,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8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3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20점,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 40점,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 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점,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는 감첨처리하는 방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제2안>은 이에 비하여 방송평가위원 회의 방송평가를 50점 더하여 400점으로 하고 반면에 제2항에서 30점, 제3항에서 10점, 제8항 에서 10점을 감하는 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17개 심사항목별 세부적인 배점 부여방안은 <붙 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승인 여부 결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 원회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 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는 안입니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과 동일하게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 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신청 공고토록 하고, 일부 사업자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10월까지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신청서 검토 및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고, 내년 1월~2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재승인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MBN에 대해서 는 재승인 심사 절차를 내년 5월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4페이지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보면 심사위원 10명에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사위원단을 15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편 허가 당시에도 수많은 심사위원들이 참가해서 허가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자료가 공개되어서 비난을 받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결국 방통위다, 그런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의 숫자를 늘려서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비계량 평가항목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심사위원들이 적으면적은 만큼 형평성이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종편 허가 시에 내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때 심사항목별로 최고점과 최하점은 배제하고 중간치로만 평가했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11명으로 했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당시에는 14명이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 측면까지 포함해서 지상파 재허가가 10명, 11명의 심사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도준호 교수를 비롯한 종편 연구반에서 제기했던 '항목별 과락 60%를 넘지 못하면 과락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정리된 것으로 보면 지상파와 똑같이 40%에 국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던 종편채널의 공적책임에 관한 문제, 예컨대 종편에서 거르지 못한 공해적인 시사 토크의 배설적인 유포,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과를 철저히 하기위해서는 과목별 과락 수준을 60%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책임 부분이 비계량항목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계량 항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우리가 의결해서 확정된 행정조처에 대한 감점이 대략 한 항목에 1, 2점밖에 안 되지요? 지상파의 경우에 2점으로 되어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과징금은 5,000만원 이하 10점, 5,000만원 이상 1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그러한 점은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상파 심사에 적용했던 감

점이 금과옥조냐,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종편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종편이 저질러온 공적책임의 문제들은 객관적으로도 지상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비계량화된 공적책임 부분에 있어서 감점 1, 2점에 국한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정해서 심사위원단에게 부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심사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지상파도 13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종편의 경우 심사대상 사업자가 4개 사업자이고, 최초 선정 심사는 아니고 재승인 심사이기 때문에 11인으로 해도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11인으로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편 연구반에서 제시한 과락점수 60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점 650점 미만이면 결국은 '재승인 거부'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총점 650점 이 과락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650점을 월등히 초과한 신청자가 일부 과목에서 60점을 못 받아서 만약에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승인'이 된다면 전체적인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약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평가의 전반적인 합리성 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제공했던 것처럼 심사항목별 점수를 40점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비계량평가 관련해서 감점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습니다만 현재 방송평가 부분에서 방송평가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제재 조치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을 봤더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 의'는 1점, '과징금'은 10점~15점까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의 틀과 달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적책임 부분에서 그 부분을 보다 더 많이 부과한다면 '12년도의 방송 평가 내용에 대한 감점 부분과 사업계획서 부분에서 나온 평가의 내용에 감점이 달리 적용 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 방송평가 결과 부분에서 반영하는 감점기 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O 김충식 부위원장

- 제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단을 15명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1명, 원안에 보면 방송분야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명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분야도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명으로 늘리고, 경영·회계 분야는 3명으로 두고, 그리고 기술분야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와 소비자단체를 1명 늘려서 4명을 늘리면 정확히 15명이 된다는 것이 제복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항목별 과락에 대해서는 지금 종편사업자들 가운데 재정능력이 과도하게 높고 또 여러 가지 시청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시청률 중에 이른바 공적책임을 방기한 시청률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의 여론을 들끓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은 바로 공적책임의 외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내버려둔다면 과거의 지상파 민방 때부터 흘러오는 시청률 지상주의를 위해여과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을 방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하간 재정

적·기술적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공적책임에서 공익성·공정성에 어긋난다면 그 점에 과락을 통해 조건부를 붙이든지 아니면 재승인을 거부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일단 1:1로 토론하는 것보다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다 듣고 나서 답변했으면 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덧붙여서 국장과 상임위원 간의 논쟁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내놓은 안이 연 구반이 월요일에 발표한 안보다 대거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에 있어서 내용들이 거 의 반영되지 않았고, 저는 왜 갑자기 이런 안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위원 수 늘리자는 것이 무슨 큰 문제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11 인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회적 쟁점이 됐고 그리고 많은 시 청자들이 종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을 몇몇 여론조사에서 표현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도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들을 확 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11명보다 15명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상파를 근거로 드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상파는 그동안 수많은 재생의 과정들 을 겪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 80년사의 기본적인 자기 검열들이 철저하게 행해져 있었 기 때문에 5.18 북한 책동 같은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초대형 사고들이 나오지 않습니 다. 방송 기술적으로 실수하거나 전체적인 흐름 속에 있어서 관점에 따라 상당히 편차는 있 지만 공정성의 문제가 불거질 뿐이지, 일방적인 편파성들이나 왜곡보도, 그다음에 거짓보도 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상파와 모든 준거의 틀을 지상파에서 가져온 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번 재승인 여부 결정에 있어서 '조건부 재승인' 과 '재승인 거부'가 or로 갔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이제까지 모든 재승인에 점수와 상관없이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김용일 과장, 그렇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제가 모든 것을 다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조건부 재승인이 들어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사례가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재승인은 조건부가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650점 미만 사업자에게는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이고 무슨 근거냐는 것입니다. 월요일 토론회에서도 '재승인 거부'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때 고려대 김성철 교수의 경우 교수 재임용 과정을 심사하는데 59점이라도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고, 60점은 살려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엄격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반에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 고민 고민을 해서 결국에는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올려놓았는데 여기에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떨어뜨리라는 것입니까,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59점이면 조건

부 재승인하고 58점이면 재승인 거부합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던져 놓았는데 2개를 동시에 올려놓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종합편성채널 선정 허가할 때 전체 과락 1,000점 만점에 800점이 과락이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총점 기준으로 800점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대항목별로 70점 과락이 있었고 60점 과락이 있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대항목이 70점이었고, 그다음에 중항목이 전체가 아니고 19개 중에 5개 항목이 60점이 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된 내용들이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통신 영역에서도 제4이통이 총점 70% 미만일 때 과락, 그다음에 항목별로 60점 미만일 때 과락, 통신도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합니다. 이것은 방송영역입니다. 지상파가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종합편성채널입니다. 그리고 연구반에서 올렸던 60%는 어디로 가고 왜 사무처에서 자의적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도대체 사무처가 연구반을 왜 운영했습니까? 공청회를 왜 했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자의성을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휘두릅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비상식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왔고 연구반에서 그렇게 올렸는데 왜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이 수치들을 마음대로 낮춥니까? 그러면 <제1안>, <제2안>으로 올리든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은 앞에 기본방향에서 밝혔듯이 지상파 재허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 양문석 상임위원

- 지상파 재허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재허가 조건을 유지한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종편은 수많은 특혜를 지상파보다 받고 규제는 수평적 규제를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엉터리 논리가 어딨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지상파와 종편이 심사가 같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무슨 고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지상파와 규제의 틀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본적인 보고서의 틀이 애초 전제가 잘못됐지요. 지상파와 심사조건과 기준의 틀을 같이 한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엉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흐름이 다엉터리이고 그렇게 했으면 연구반에서 그 전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연구반에서도 그런 일관성을 갖고 심사기준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연구반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흐름들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맞춰 왔는데, 지상파와 종편이다르다는 전제 속에서 준비해 왔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지상파와 종편이 같다는전제로 놓고 이렇게 왕창 바꾼다면 연구반을 왜 운영했습니까?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지상파와 종편이 같습니까? 퀄리티가 같고 제작비율이 같고 편성비율이 같고 유사합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방송법 규제 체계상 지상파 규제보다는 종편 에 대한 규제가 중간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O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도무지 종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국회의 관심사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심사기준표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심사기준표를 기본적으로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양 위원님께서 발언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저도 발언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연구반에 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만 들지를 못해서 저희에게 건의할 때도 복수안으로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 금 사무국에서 만든 안이 가장 최선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 나름대로 고민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특히 저는 양 위원님이나 김충식 부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로 지상파 자료 를 봤습니다. 그동안 재허가를 어떻게 해 왔고 재허가를 할 때 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을 어 떻게 했는지 자료를 받아서 쭉 봤는데, 이것이 재허가를 할 때마다 불변의 기준은 아니고 조금씩조금씩 그때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의적절하게 그 당시의 시류를 반영했던 고민의 흔적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방송평가를 여기에 반영한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07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 오래 전에는 600점까지 올라갔던 것이 점차 500점 을 거쳐 400점까지 줄어서 방송평가의 관한 항목이 400점, 나머지가 600점 이렇게 운영이 됐고 그 600점 안에서도 배점 포션을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매번 달라져 왔던 것으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이번 사무국에서 제시한 안에는 400점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연구반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줄여서 350점으로 하느냐, 2가지 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평가가 포션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규제를 통해 직접적 으로 위법행위를 잡아내고 또는 허가나 인허가를 통해 규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점점 더 세련되어 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런 평가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 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평가의 비 중을 자꾸 낮추게 되면 이것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거쳐 고심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벌써 오랫동안 쌓여온 노하우가 반영된 제도인데, 이 제도를 자꾸 비중을 스스로 낮춰가는 것은 방통위, 정부 당국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적책임을 지금 중하게 물어야 한다, 야당 의원님께서도 많이 주장하셔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 공공성 부분을 묻는 배점을 상당히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금도 말씀이 있었지만 공공성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한없이 강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있는 법체계나 제도 안에서 보면 아무래도 지상파가 가장 공공성 면에서는 앞서야 하고, 그다음에 PP가 더 뒤쯤에 있다면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 종편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식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지상파를 기준으로 해서 적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무국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지상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 것이냐, 공정성 부분도 저는 지상파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무국에서 바로 답변하기보다는 상임위원들 간에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평가위원회는 제가 책임을 맡고 있어서 방평위를 김 대희 위원님께서 높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연구반에서 지상파에 적용하던 방송평가부분 400점 룰을 300점으로 낮추자는 논리가 무엇이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이 종편은 '11년도 12월에 개국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12년도 1년치만 방송평가 결과 가 반영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300점이나 350점으로 낮추자는 의미였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거기에다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평가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천편일률적이고 도식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들이 연구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비중을 1,000점 중에서 400점까지 넓혀 놓으면 나머지 종편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최초로 출연한 미디어, 그리고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재승인에서 무사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체크포인트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300점이냐, 350점이냐 하는 논의가 연구반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무국에서 절충적으로 300점이 아닌 350점까지 정리한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지금 큰 이야기 중의 하나가 왜 지상파가 기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방송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지상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륜을 쌓아오다 보니까 지상파의 공익성·공공성이 쌓였지요. 물론 중간 어느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

만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지상파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야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 어졌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송이 PP도 있고, 보도채널, 종편채널 쭉 있는데 그런 것 들을 평가하는 기준점을 지상파를 놓고 보면 지상파보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지상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공익성과 공공성이 부합해 들어오느냐 를 보는 기준점이 지상파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배점이나 평가를 하면서 지 상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는 것이 있고 쭉 해 온 관례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존중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의 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기준점 없이 그때그때마다 적용한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조금 유감스럽게 보는 것은 왜 사무국에서 <제1안>, <제2안>으로 냈느냐, 이 부분에 대해 사무국 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1안>, <제2안>으로 해서 심사배점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선 사무국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놓고 보면 고민은 되겠지요. 그러나 <제1안>, <제2안>을 가지고 한 자체에 대해 저는 마땅치 않다는 말씀드리면서 <7>번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부분은 그동안 지상파는 75점을 했지요? 그런데 종편은 지역방송이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에 관해 배 려가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지역 부분은 10점으로 확 줄 이고, 오히려 더 종편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공적책임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책임을 더 강화하는 부분에 사무국에서 중점 을 뒀으면 어떨까, 그래서 사무국 스스로가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도 말씀하시고 바깥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 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 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과 관련해서 김충식 부위원장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 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과락 부분을 40%로 할 것이냐, 60%로 할 것이냐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동안 쭉 해 왔던 지 상파의 기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보도채널을 60%로 올렸다면 나중에 지상파의 기준도 60%로 올 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1안>으로 가자, <제2안>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무국의 고민이나 철학이 완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아 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홍성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데 바라보는 상황은 비슷한데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상파 기준점이다, 지상파 콘텐츠가 기준점이고 국민의눈높이는 지상파에 의해서 종편의 수준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종편은 터무니없이 수준이저질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이 재승인 심사를 하느냐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장에서 지우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보다 나은 방송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시청하기 위해서... 후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상파의 기준까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상파 수준으로 규제를 해야 합니까, 지상파보다 더 높게 규제를 해서 지상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현재 엉망인 부분들의 질서를

잡고, 콘텐츠의 질을 고르게 하고, 그리고 어떤 시청자들도 좋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려 주어야 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심사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번에 는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보도의 공정성·공적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서 집중적으로 그 수준을 끌어 올리라는 의미에서 저는 연구반에서 60%를 이야기했다고 보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그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다음 심사 때는 55%, 50% 하면서 지상파와 종편을 놓고 시청자들이 채널 이름을 지우고, 번호를 지우고 똑같이 봤을 때 지상 파와 종편채널들의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지상파 준거점의 40%라는 것입니다. 왜 재승인 심사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봐주자, 말자, 때려잡자 말자가 아니라, 기본적인 심사라는 절차가 왜 필요했고, 이런 심사를 만들었고, 이 심사에서 무엇을 얻어낼 것이고 하는 고민을 한다면 당연히 60%지요. 그 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홍성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 방송의 역사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적절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성에 있어서 짧은 역사를 가진 종합편성 채널이 얼마만큼 빠르게 정상화 또 국민의 눈높이까지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이 심사기준표에 녹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들을 저는 월 요일에 토론회 사회를 보면서 연구반이 엄청나게 고민했다는 흔적들을 제가 그때 그런 표 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느껴집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노력을 사무처가 아주 잘못된 기준 속에 일방적으로 낮춰버리는 이 부분은 있을 수 없 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반의 과정에도 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했을 것입니다.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O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느냐, 첫 공청회 때 상당히 많은 비판들이 일어 났었고, 그리고 이번 토론회 때 많은 언론들이 심사기준표에 대해 비판적인 어프로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상당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기준표에 상당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올린 이보고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토론을 충분히 하셨는데 옛날보다 종편 심사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엄격히 해야 하는데 우리가 계량화한다는 것은 냉정하게 숫자적으로 하자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감정을 개입하지 말고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심사위원을 더 늘리자는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연구반에서 만든 것보다도, 정치권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상당히 더... 방송프로그램, 기획... 일반적으로 토론회가 50% 이상 차지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올리자고 해서 연구반보다 더 올리는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락 문제도 양쪽에 논리적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과락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산수, 국어,영어 이런 것들의 배점인데 과락의 문제를 제기한 것과 여기 보니까 배점이 다 다릅니다.

국어는 400점, 영어는 200점, 체육은 30점 줬는데 배점이 굉장히 적은 것이 과락이라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어야 하느냐, 이런 통계학적 영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루 더 토론을 거쳐 시간상으로 9월 말 안으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하기는 어려우니까 금주 내로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오늘 밤을 새서라도 협의를 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 결정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안은 하루 더 논의를 거쳐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날짜는 내일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0분 폐회 】